

2026년도 양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양주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주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1명)

임용직위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1명	2년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직제개편 시 직무관련 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 **임용신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의 요건을 갖춘 자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별정직공무원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요건’ 또는 ‘국가공무원의 동일 직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2. 주요 업무 분야

채용분야	채용직급	담당 업무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 보건소 운영총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등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 ○ 그 밖에 보건소 관련 사무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3.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 「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나. 응시요건 : 선발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요건

○ 아래 필수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채 용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관련학과) 학력기준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관련분야 :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분야(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관련규정 >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인성검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예정, 인성검사 실시일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2차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illegible]

6.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6. 10. 23.(금) ~ 2026. 10. 30.(금)(7일 이상)
- 원서접수 : 2026. 11. 2.(월) ~ 2026. 11. 6.(금)(5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예정) : 2026. 11. 18.(수)
- 인성검사 (예정) : 2026. 11.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일 (예정) : 2026. 12. 4.(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6. 12. 14.(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1. 2.(월) ~ 2026. 11. 6.(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 / 문의전화 : 031-8082-5224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제출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응시요건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 ☞ 양주시청 1층 민원여권과 6번 창구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5호 작성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학위 소지자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전공분야 표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구 분	내 용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경력증명서 원본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출력으로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 해당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가 수기 기재 가능하며, 상기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9.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요약서 1부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1.1. 이후)]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1.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서식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보 수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0,490천원

- ※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9. 기타 참고사항

-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 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경력증명서 제외)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을 지참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 변경 불가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채용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총무과(☎ 031-8082-5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직위	부서	연락처
보건소장	양주시청 보건행정과	☎ 031-8082-7102